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118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가. 2021 마포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 표현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명 명시(안 제3조제2항)

1)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례에 고시 제명 명시

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1)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2)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7조제4항)

3)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50호」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2) 2021 마포구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기획예산과-2593(2021.2.23.)]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 또는 활성화(안건발굴) 권고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1. 8. 12. ~ 9. 1.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9.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민에게”로,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도시농업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때”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을 “위원을 해촉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민에게 ----------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도시농업업무 소관 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9조(회의 등) ① ---------- ---------- 때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 --- 위원을 해촉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이동주 (☎ 3153-8543)